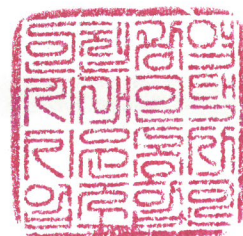


西紀	1984年	8月	1日	制定	施行
西紀	1984年	9月	28日	改正	施行
西紀	1987年	7月	10日	改正	施行
西紀	1988年	1月	1日	改正	施行
西紀	1989年	3月	30日	改正	施行
西紀	1990年	4月	30日	改正	施行
西紀	1990年	9月	1日	改正	施行
西紀	1993年	6月	2日	改正	施行
西紀	1994年	12月	2日	改正	
	1995年	1月	1日	施行	
西紀	1995年	2月	5日	改正	
	1995年	3月	1日	施行	
西紀	1996年	12月	19日	改正	
	1997年	1月	1日	施行	
西紀	1997年	12月	29日	改正	
	1998年	1月	1日	施行	
西紀	1998年	7月	15日	改正	施行
西紀	1998年	12月	26日	改正	
西紀	1999年	1月	1日	施行	
西紀	1999年	3月	23日	改正	施行
西紀	2000年	12月	21日	改正	
西紀	2001年	1月	1日	施行	
西紀	2002年	8月	8日	改正	施行
西紀	2016年	8月	1日	改正	施行
西紀	2020年	9月	17日	改正	施行
西紀	2021年	2月	9日	改正	施行
西紀	2021年	12月	29日	改正	施行
西紀	2022年	2月	25日	改正	施行
西紀	2023年	9月	16日	改正	施行

福 祉 會 規 定



仁川廣域市個人택시運送事業組合



목 차

제 1 장 , 총 칙

제 1 조 (목 적)

제 2 조 (명 칭)

제 3 조 (사 무 소)

제 4 조 (사 업)

제 2 장 ,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제 6 조 (권 리)

제 7 조 (의 무)

제 3 장 , 임 원

제 8 조 (임 원)

제 9 조 (임.직원의 선임)

제 10 조 (직 무)

제 4 장 , 회 의

제 11 조 (심의위원회)

제 12 조 (회 의)

제 13 조 (회 의 록)

제 5 장 , 자 산 및 회 계

제 14 조 (자 산)

제 15 조 (운 영 비)

제 16 조 (사업년도)

제 6 장 , 복지금 지급제한

- 제 17 조 (적용범위)
- 제 18 조 (용어의 정의)
- 제 19 조 (지급 제한)
- 제 20 조 (이직위로금 지급액의 결정)
- 제 21 조 (복지금 지급)
- 제 22 조 (지급의 제한)
- 제 23 조 (복지가입금 및 복지금)
- 제 24 조 (규칙의 제정)
- 제 25 조 (복지회 해산과 청산인)

제 7 장 , 부 칙

- 제 26 조 (시 행 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회원의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직계존비속의 애, 경사가 있을 시 축, 조의 복지금을 지급하고 이직회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전을 기하고 회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 칭)

본 회는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회(이하 “복지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3 조 (사 무 소)

본 회 사무소는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내에 둔다.

제 4 조 (사 업)

본 회는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회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시 조의금 지불에 관한 사항
3. 회원 또는 직계존비 속의 축의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회원 사망 시 유족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원의 복지에 관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1. 본 회 회원은 개인택시 면허취득자가 되며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조합원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 사업면허를 양도하거나 면허 취소 된 자는 회원의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제 6 조 (권 리)

본 회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회에서 지급되는 복지금을 받을 권리.

2. 복지사항에 대하여 질문 및 서류열람의 권리.

제 7 조 (의 무)

본 회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규정 및 결의사항 준수.
2. 본 회의 부과금 및 운영비 납입.
3. 본 회의 조회 및 질문에 대한 회답.

제 3 장 임 원

제 8 조 (임 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1인
3. 심의위원 10인이내
4. 감사 2인
5. 조합 전무이사

제 9 조 (임.직원의 선임)

1. 회장은 이사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조합 이사로 한다.
3. 감사는 조합 감사가 겸임한다.

제 10 조 (직 무)

1. 회장은 본 회 임무를 통괄하고 본 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심의위원은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감사는 본 회에 관하여 감사한 후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4. 임원은 명예직 무보수로 한다.
5. 직원은 상사의 명을 받아 본회의 업무를 전담 처리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1 조 (심의위원회)

1. 본 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조합 이사회로 대체할 수 있다.
2. 심의위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과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① 규정 개정 심의(안)
 - ② 복지금 지급액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
 - ③ 회원이 부담할 부과액 결정 및 부과방법 심의
 - ④ 기타 위임 사항 처리

제 12 조 (회 의)

1. 심의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심의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13 조 (회의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심의위원 2인 이상 서명 날인하여 보관 비치한다.

1. 회의 일수 및 장소
2. 회의 구성원의 재적수와 출석인원 서명
3. 부의안건
4. 의사진행 요령
5. 기타 참고사항

제 5 장 자산 및 회계

제 14 조 (자 산)

본 회 자산은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1. 본 회에 적립하여 있는 금액
2. 회원의 부과금 및 특별회비

3. 본 회 기금에서 발생한 수입
4. 보조 및 기부에 의한 재산
5. 기타수입

제 15 조 (운영비)

매년 조합에서 세입, 세출예산(안)을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의 승인을 득 하여 운영토록 한다.

제 16 조 (사업년도)

1. 본 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본 회의 결산은 이사회회의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복지금 지급제한

제 17 조 (적용범위)

1. 이직위로금은 회원의 자격상실(양도 또는 취소)시 지급한다.
(단, 조합 자진 탈퇴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 축의금은 회원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및 회갑 시에 지급한다.
3. 조의금은 회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시 지급한다.
4. 유족위로금은 회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 18 조 (용어의 정의)

1. 복지금이라 함은 이직위로금 , 축, 조의금, 유족위로금을 말한다.
2. 사망이라 함은 회원 또는 회원의 직계존비속의 순직, 사고사, 병사, 변사 단, 자살은 회원에게만 적용한다.
3. 근속 년한이라 함은 본 회 규정이 시행되어 월례회비를 부과 징수한 날로부터 면허양도 및 면허취소일(면허반납 포함)까지를 말한다.
(면허 휴지는 제외)

제 19 조 (지급제한)

1. 지급기준은 점수제로 한다.

2. 근속 년한을 기준으로 한다.
3. 조합 또는 사회발전을 저해한 회원은 감점한다.

제 20 조 (이직위로금 지급액의 결정)

1. 근속월수 1개월에 0.5점으로 하고 1점당 지급액은 회원 1인당 5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항의 회원 정수는 최고 4,100명을 상한선으로 하며 4,100명을 초과하는 회원에게 할당되어 부과 징수된 금액에 대하여는 복지기금으로 적립한다.
3. 상벌위원회에서 경고처분을 받았을 경우 10점을 감점하되 반복 하여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는 5점씩 추가하여 감점한다.
4. 근속기간 중 공과금(조합비 및 복지비, 특별회비 등)을 4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는 다음에 준하여 감점한다.
 - ① 4개월 연체시(최초감점): 조합비 5점, 복지회비 5점 (10점)
 - ② 최초감점 발생이후 연체시 매1개월당: 조합비 2점, 복지회비 2점 (4점)
5. 상벌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는 매회 30점 감점, 제명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50점을 추가 감점한다.
6. 동조 제3항 및 제5항은 사유발생의 익일부터 5년, 제4항은 연체된 공과금을 완납한 날의 익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감점은 면제한다.

제 21조 (복지금 지급)

1. 축의금은 회원의 회갑, 결혼시 10만원 및 화환
회원의 부모 회갑시 5만원 및 화환
회원의 자녀결혼시 5만원 및 화환
단, 화환은 경사시 행사 3일전까지, 조사시는 발인 12시간 전까지 사전에 신청할 경우 지급한다 (현금 대체 불가)
2. 조의금은 회원 사망 및 회원의 직계존비속 중 부.모.처.자 사망시 다음에 준한다.
 - ① 회원 본인사망시 30만원 및 조화
 - ② 부.모 사망시 10만원 및 조화
 - ③ 회원의 배우자 사망시 20만원 및 조화
 - ④ 회원의 자녀사망시 10만원 및 조화
3.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 조의금은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1년이 내에 청구한 건에 대해서 신청 후 1주일 이내 지급하고 제2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이 결정된 이직위로금, 유족위로금은 후지급한다.

4. 복지금은 지급사유 발생시 신청인이 있을 때에 한하여 복지회 소정의 절차와 심의결과 정당한 사유에 한하여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본인 또는 소정의 수령인에게 지급한다.
5. 복지금 신청자로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재심은 청구 할 수 있으나, 3심 청구는 할 수 없다.

제 22 조 (지급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회원 또는 회원 가족의 신청이 없을 때
단, 축. 조의금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2. 사유발생일 현재 4개월 이상 조합에서 부과하는 공과금 미납자 단, 축. 조의금 및 화환은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4개월이상 연체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조사시 화환은 예외로 한다.
3. 축.조의금 지급소멸기한을 1년으로 하며,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경과후 신청건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 23 조 (복지가입금 및 복지금)

1. 복지금 확보를 위하여 신규 회원은 일괄 10만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2. 복지기금 적립금은 환불하지 않는다.
3. 복지 위로금 계산 방법에 의해 지급한다.
4. 복지회비는 정액제로 정하여 징수하며 금액 결정은 매년 마지막 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24 조 (규칙의 제정)

본 규정에 필요한 본 회의 규칙은 심의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 25 조 (복지회 해산과 청산인)

1. 심의위원회 결의로서 해산하고 청산인은 당시 회장이 된다.
2. 해산 시 복지회 자산은 전 회원에게 균등분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규정 제22조(지급제한)3항 사유발생일 현재 5개월 이상 공과금 미납자는 제 23 조 3항에 준한다.

제 7 장 부 칙

제 26 조 (시 행 일)

본 규정	1984년 8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본 규정	1984년 9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	1987년 7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	198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	1989년 3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	1990년 4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	1990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	1993년 6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	1994년 12월	2일부터	개정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	1995년 2월	5일부터	개정하여,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	1996년 12월	19일부터	개정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	1997년 12월	29일부터	개정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	1998년 7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	1998년 12월	26일부터	개정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	1999년 3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	2000년 12월	21일부터	개정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	2002년 8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	2016년 2월	2일부터	개정하여,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	2020년 9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	2021년 2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	2021년 12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	2022년 2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	2023년 9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